

8.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8-13호 1998. 1. 26.

주요 골자

- 가. 벤처기업 판정요건인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기술·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으로 정함.
- 나.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의 범위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중의 청정생산시설로 정함.
- 다.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을 포함하여 물류 표준화를 유도함.
- 라.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의 범위에 상호 신용금고법에 의한 합병금고 및 우량금고를 추가함.

개정 취지

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(1997. 12. 13. 법률 제5,417호)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(1997. 12. 31. 대통령령 제15,562호)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도매배송업을 추가하여 물류표준화를 유도하려는 것 등임.

주택회보